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07 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김종양・김미애・조은희

박성훈 · 정연욱 · 김태호

이성권 • 정동만 • 김소희

주호영 · 김장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익신탁법」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·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신탁의 신규 설정 또는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, 신탁재산의 운용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,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와관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,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을 하거나 공익신탁계약 체결을 홍보하는 경우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고,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공익신탁법」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「기부금 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지 않도 록 명시함으로써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조제12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「공익신탁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다음	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		
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			
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			
적용하지 아니한다.		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<u>12. 「공익신탁법」</u>		